

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·운용 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26. 8. .

발 의 자 : 최승태 의원

1. 제안이유

-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·집중호우·가뭄 등 기후위험이 일상화되고 그 피해가 시민의 삶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,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재난의 예방·피해 경감과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적응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·운용함으로써, ‘탄소를 줄이는 도시’와 ‘기후위기에 강한 도시’를 동시에 구현하는 감축·적응 통합형 기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, 하남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회복력 향상 및 시민의 생명·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- 나. 기금의 용도 및 운용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- 다. 기금운용계획·결산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- 라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·기능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- 마. 기금사업의 선정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및 제13조)
- 바.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

-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에 따라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-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시 전입금,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,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정한 것으로 이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 및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것임.
- 안 제5조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정한 것으로,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반 조성 및 시책 사업에 유연하게 재원을 배분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임.
-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기금 운용의 원칙, 운용계획 및 결산, 관리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, 위원회 구성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임.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
참고) 부서 의견

○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: 적합

-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

○ 타 조례와의 중복여부 등 통폐합 가능성 : 중복없음, 독립 제정 타당

- 본 신설 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기반하여 기금의 조성 재원(안 제4조), 구체적 세출 용도(안 제5조), 기금심의 위원회 운영(안 제9조) 등 행정적·재무적 집행 조례로 성격이 상이하므로 조례가 제정된다면, 독립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○ 제4조(기금의 재원) : 재원확보 불확실

- 기금의 재원으로 열거된 ‘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’ 및 ‘환경 관련법 과태료 징수금’은 신규 외부 세입이 아니며, 이미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어 환경분야 계속사업비로 집행 중인 기존 자원임
-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금 설치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나, 자체적인 신규 세입원 확보 대책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형식적인 기금 운용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됨